

주식회사 대한제 37 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식회사 대한제3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

일 시: 2023년 03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3층(삼성동, 아셈타워) 본점 회의실

주 주 총 수 : 5명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6,920,000주

출석 주 주 수 : 5명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 : 6,920,000주

의장 대표이사 이광서는 본 회의의 소집 절차가 정관에서 정한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출석한 주주가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이후 의장은 본 회의가 다음과 같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다는 점을 알리고 동 안건을 본 회의에 부의하였다.

제1호 의안 : 설계용역계약 승계계약 변경합의 체결 주인의 건

의장은 설계용역계약 승계계약 변경합의 체결 주인의 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출석주주 전원이 찬성(서면의결권 행사 포함)으로 의사표시를 표명하여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제2호 의안 : 소방시설설계 도급계약 체결 주인의 건(367-1/368-7)

의장은 당사의 소방시설설계 도급계약 체결 주인의 건(367-1/368-7)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출석주주 전원이 찬성(서면의결권 행사 포함)으로 의사표시를 표명하여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제3호 의안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의장은 당사의 정관 변경 승인의 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출석주주 전원이 찬성(서면의결권 행사 포함)으로 의사표시를

표명하여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개정 전	개정 후
<본조 신설>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주주 보호</p> <p>제 56 조 (주주 보호에 관한 사항)</p> <p>① 회사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설실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자산을 투자 및 운용 하여야 한다.</p> <p>② 회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p> <p>제 57 조 (주주 보호를 위한 행위준칙)</p> <p>①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주주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투자설명서 및 투자보고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회사가 그 자산으로 특정한 부동산이나 증권을 매도 또는 매수하고자 하는 정보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회사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2. 주요주주3. 회사와 자산의 투자 및 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 <p>③ 회사의 임직원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를 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2. 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하여 자기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3.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그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위 <p>④ 회사의 임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관련 이사, 감사,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자산보관기관에도 책임질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p> <p>⑤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제4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의장은 이상으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총회 종료시간 오전 10시30분)

위 주주총회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23년 03월 14일

주식회사 대한제3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 표 이 사 이 광 서 (법인인감인)

